

「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5월 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5월 17일

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선산출장소장 김 언 태

나. 제안이유

-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입점절차를 간소화하여 입점업체를 증대시키고 쇼핑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)
-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및 업체 범위 확대(안 제4조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식품위생법」
 -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위원회의 폐지와 운영에 대한 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쇼핑몰 운영·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제4조는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 출연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, 업무 위탁 시 전문적·체계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관 업무 명확화 및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 위원회 심의 절차의 폐지로 쇼핑몰 입점허가까지 과정을 단축·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입점심사를 담당부서로 일원화함에 따라 심사 시 객관적인 기준의 적용을 위한 공식적·체계화된 평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 이의 신청·외부 심사위원 위촉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집행부서의 자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

- 농특산물쇼핑몰 입점 품목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입점허가 평가 기준 점수(60점)를 현행 점수(70점)로 유지해야 함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